

광주지방법원 2022. 11. 22 선고 2022가단51982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, 유병연, 김정원, 박환철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성 담당변호사 정우중

변 론 종 결 2022. 11. 8.

판 결 선 고 2022. 11. 22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 피고와 C 사이에 2019. 9. 19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,
피고는 C에게 광주지방법원 2019. 9. 19. 접수 제1653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
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D에 대한 채권자인데, D은 2019. 9. 19.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고 한다)에 관하여 매매계약(이하 ‘이 사건 매매계약’이라고 한다)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,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

2. 판단

이 사건 부동산이 D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. 오히려 을 제1, 2,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2억 원인데, 2019. 7. 19. 설정된 근저당권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이 272,229,700원인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다.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.

판사 김성준

별지